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

1. 관련

- 가. 중앙사고수습본부-중앙방역대책본부 합동회의(2022.2.10.)
- 나.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(2022.2.11.)
- 다.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(보험급여과-839호, 2022.2.11.)
- 라. 보건소 선별진료소·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추가 안내(중앙방역 대책본부-5860호, 2022.2.17.)
- 마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기관 감염예방·관리」(1-1판) 개정·배포(중앙 방역대책본부-6079호, 2022.2.18.)
- 2.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및 보호자·간병인 등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· 간병인·실습생의 PCR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(주요내용)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·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(취합) 건강보험 적용
- (**적용일**) 2022.2.21.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
 - ※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.2.25.부터 가능

붙임 :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

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**보건사무관 조영대** 보건사무관 **소영대** 보험급여과장 **전**결 2022. 2. 18.

협조자

수신자

시행 보험급여과-958 (2022. 2. 18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